



22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 보고

제108회기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: 위원장 김재철
서 기 박원규

1. 조직

1) 임 원

- 위원장: 김재철
- 회 계: 김홍선
- 서 기: 박원규
- 위 원: 홍성현 김성권

2. 회의

1) 제1차 회의

- ☞ 일 시: 2023. 11. 2.(목) 14:00
- ☞ 장 소: 총회회의실
- ☞ 결의사항

① 아래와 같이 위원을 조직하다.

위원장: 김재철 목사, 서기: 박원규 목사, 회계: 김홍선 장로, 위원: 홍성현 목사, 김성권 장로

2) 제2차 회의

- ☞ 일 시: 2023. 12. 5.(화) 11:00
- ☞ 장 소: 총회회의실
- ☞ 결의사항

① 각 위원들이 아래와 같이 파트를 맡아 연구하기로 하다.

가. 소래노회 헌의 [분쟁 수습 개정의 건] - 김홍선 장로

나. 전북노회 헌의 [분쟁 수습 개정의 건] - 김성권 장로

다. 대전노회 헌의 [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4장 15조 개정의 건] - 홍성현 목사

라. 강중노회 헌의 [노회분립 합병 신설] - 김재철 목사, 박원규 목사

② 차기회의는 1월 2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.

3) 제3차 회의

- ☞ 일 시: 2024. 1. 25.(목) 11:00
- ☞ 장 소: 판암장로교회당
- ☞ 결의사항

① 신중철 목사를 발의자로 초청하여 발의자의 내용을 청취하다.

② 노회 지침관련 공청회를 1회 열기로 하다.

가. 일시: 2024년 5월 2일 11시

나. 장소: 대전판암장로교회(홍성현 목사 사무)

다. 강사

a. 소재열 목사(노회 분립합병 신설 폐지에 관하여)

b. 신현철 목사(사회소송 시행세칙 개정 관하여)

③ 차기회의는 3월 5일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.

4) 제4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3. 5.(화) 11:00

☞ 장 소: 총회회의실

☞ 결의사항

- ① 5월 2일 공청회에 강사 소재열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고사하니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목사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② 공청회 홍보는 기독교신문에 1회 광고를 게재하고, 전 총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기로 하다.
- ③ 공청회를 위한 추경예산을 500만원 신청하기로 하다. (운영비 50만원, 강사비 100만원(50만원x2명), 홍보비 200만원, 식대 150만원(1만5천원x100명))
- ④ 차기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대전판암교회에서 하기로 하다.

5) 제5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4. 19.(금)

☞ 장 소: 비대면회의

☞ 결의사항

- ① 5월 2일 공청회를 위한 추경청원서를 올렸으나 재정부에서 반려되었음을 확인하다.
- ②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500만원 추경을 올리기로 하며 함께 모일 시간이 없어 비대면회의로 진행함을 전달하다.

6) 제6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5. 2.(목) 10:30

☞ 장 소: 판암장로교회당

☞ 결의사항

- ① 공청회 시 인도는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하고 기도는 김홍선 장로가 하고 축도는 홍성현 목사가 하기로 하다. 강사소개는 신현철 목사는 박원규 목사가 하고 최광염 목사는 김성권 장로가 소개하기로 하다.
- ② 5차 비대면회의로 진행한 추경의 건은 한번 더 확인하기로 하다.
- ③ 강사사례비는 여비, 강의비, 연구비로 1인 5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하다.

7) 제7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5. 30.(목) 13:00

☞ 장 소: 총회회의실

☞ 결의사항

- ①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원만 했으며 시간 진행 및 강사 선정과 강의내용이 알차며, 호응도와 참



여 인원이 많았음을 확인하다.

② 7월 2일~3일 총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대전에서 1박 2일로 갖기로 하다.

8) 제8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7. 2.(화) ~ 3.(수)

☞ 장 소: 판암장로교회당

☞ 결의사항

① 워크숍 1부: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4장 15조 보완의 건

청원사항: 사회소송대응팀의 구성에 관한 관장은 총회 임원회가 한다.

② 워크숍 2부: 노회 분립 합병 신설 폐지 시행지침 마련 건

③ 워크숍 3부: 최종정리

3. 최종 보고

1.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

* 분쟁(사고)노회 수습매뉴얼 개정 / 노회의 분립, 합병, 신설, 폐지, 시행지침 마련 /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4장 15조(사회소송 승소시 모든 권한을 회복시킴)를 개정

2. 처리 내용

*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4장 15조(사회소송 승소시 모든 권한을 회복시킴)중 소송대응팀을 추가 하여 시행세칙안을 개정함

* 지역노회의 무지역화와 무지역노회의 분립 등을 지양하고 건강한 노회를 위해 노회의 합병 과 분립의 체계화 및 노회 신설시에는 해외노회도 예외 없이 반드시 21당회를 충족해야만 함 등 지침을 마련 함

청 원 서

수신: 총회장
참조: 서기 및 재정부장
제목: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 청원의 건

아래와 같이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4장 제15조 개정 및 노회의 분립, 합병, 신설, 폐지에 대한 시행지침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관련

1)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4장 제15조 개정

현행	개정안
소송제기자가 승소시,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.	1) 승소한 소송제기자는 30일 이내에 승소사실과 그 판결문을 총회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, 승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 2) 총회임원회는 사회소송대응팀을 한 회기에 00명으로 구성하여 승소한 내용과 판결문을 사회소송대응팀으로 전달하여 판결문의 내용을 파악하고,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함으로 총회의 결의, 처분, 명령 등에 대하여 원활하게 처리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다. 3) 총회임원회는 최종 결의 후에 이를 시행하되 소송당사자, 관할치리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, 총회에 보고하여 사건을 종결한다.

2) 부칙 추가: 사회소송대응팀 구성에 대한 관장 및 규정 제정/개정은 총회 임원회가 한다.

2. 노회의 분립, 합병, 신설, 폐지 시행지침 제정(별첨)

2024년 9월

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
위원장 김재철
서기 박원규



<별 첨>

노회의 분립, 합병, 신설, 폐지 시행지침(안)

1) 노회 합병

노회의 합병 시 아래의 합병매뉴얼을 따라 총회에 청원(현의)하며, 총회가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현의 시 제출하고 정치부는 합병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합병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함. 또한 지역노회와 무지역노회가 합병하여 지역노회를 무지역화 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됨

2) 합병매뉴얼

- ① 합병을 원하는 당회의 청원
- ② 합병을 원하는 노회의 결의(합병위원선정, 총회현의 결의)
- ③ 합병을 원하는 양 노회의 대표인 합병위원들의 합의
 - 양 노회의 합병할 교회의 명단(조직교회, 미조직교회)
 - 양 노회의 목사와 장로 총대 명단
- ④ 노회합병합의 각서 작성과 합병위원들의 서명날인
- ⑤ 양 노회가 다가오는 총회에 현의
- ⑥ 차기 총회에서 합병허락(합병위원선정 및 조직)
- ⑦ 합병을 현의한 노회와 총회합병위원회가 양 노회 합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살펴 확인하고 합병을 결정

3) 합병 각서

노회 합병 합의각서

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
대한예수교장로회 B노회

하나님의 은혜로 양 노회가 합병하기로 합의하고 A노회와 B노회를 C노회로 칭하며 합병 특별위원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목사(A노회)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목사(B노회)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각서한다.

제1조: “A”와 “B”는 노회 합병을 위한 임시노회(정치 제10장 제9조)를 A는 20__년__월__일에, B는 20__년__월__일에 소집하여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정치 제12장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__회 총회에 노회 합병 허락을 청원한다.

제2조: 합병노회의 위치는 합병노회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로 한다.

제3조: 합병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“○○노회”로 한다.

제4조: “A”와 “B”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상회비와 교회 보조는 20__년 봄 정기회까지 양 노회의 현재대로 한다.

“A”와 “B”의 재정은 합병 이후 합산하여 운영한다.

제5조: 합병한 노회의 규칙은 합병 후 양 노회의 규칙을 참고하여 조정한다.

제6조: 20__년 예산은 합병 후 가을 정기회에서 새로 편성한다.

제7조: 합병노회의 임원조직은 합병 전 특별위원이 조정하여 조직한다.

제8조: 합병노회의 합병 시점은 총회 결의와 확인 총회합병위원회의 확인 후 합병예배를 드릴 때 총회장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다가오는 총회에서 보고된 뒤 확정된다.

제9조: 양 노회의 회원은 노회 합병 이후 어떤 이유로도 노회분리 또는 재산 분할을 요청하지 못한다. 단 합병을 원치 않고 타 노회로 이명 이적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회결의에 따라 허락하기로 하다.

제10조: 합병노회의 회기는 A노회의 회기대로 하기로 하다.

제11조: 본 합의 각서의 미비 사항은 “A”와 “B”의 합병특별위원 합의에 의한다.

제12조: 본 합의 각서는 합병노회의 대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주후 20__년__월__일

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특별위원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대한예수교장로회 B노회특별위원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4) 노회 분립

노회 분립 시 청원한 노회에서 원하는 대로 무작정 분립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조직교회명단과 미조직교회 명단을 제출하고 분립예정인 A, B노회의 명단을 명확히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어야 함

또한 노회가 제출한 명단과 총회 전산에 있는 명단을 비교하여 타 지역노회에서 교회를 빌려오는 일은 금하며, 분립하는 노회가 각 21당회가 안된다면 분립청원은 기각해야 하고 분립위원회에서도 각 21당회가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분립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분립을 진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.

또한 노회의 분립 시 지역경계를 명확히 하여 분립이후에도 노회의 지역경계가 흐트러지지 않아 지역노회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, 무지역노회의 분립은 지양해야 하며, 총회에 분립이 보고된 후에는 각 노회에서 이명/이적을 정상적으로 청원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.

5) 분립 합의 각서

노회 분립 합의각서

대한예수교장로회 가칭A노회

대한예수교장로회 가칭B노회



하나님의 은혜로 노회가 분립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가칭A노회와 가칭B노회로 칭하며 분립 위원에 가칭A노회 소속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목사로 정하고, 가칭B노회 소속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목사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각서 한다.

제1조: “가칭A”와 “가칭B”는 노회 분립을 위한 정기(임시)노회(정치 제10장 제9조)를 20__년 __월 __일에 소집하여 투표수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정치 제12장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__회 총회에 노회 분립을 청원한다.

제2조: 분립노회의 위치는 각 노회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로 한다.

제3조: 분립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“A노회”, “B노회”로 한다.

제4조: “A”와 “B”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상회비와 교회 보조는 20__년 봄 정기회까지 양 노회의 현재대로 하며, 20__년 예산은 총회에 분립보고 후 가을 정기회에서 새로 편성한다.

제5조: 분립노회의 임원조직은 분립 전 특별위원이 조정하여 조직한다.

제6조: 분립 전 사회소송 및 노회의 치리에 대해서는 서로 무효로 하기로 하다.

제7조: 본 분립합의 각서의 미비 사항은 “가칭A”와 “가칭B”의 분립특별위원 합의에 의한다.

제8조: 분립노회의 분립 시점은 총회 결의와 확인 총회분립위원회의 확인 후 각 분립예배를 드릴 때 총회장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다가오는 총회에서 분립위원회 보고 뒤 확정된다.

제9조: 본 합의 각서는 분립노회의 대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주후 20__년__월__일

대한예수교장로회 가칭A노회특별위원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대한예수교장로회 가칭B노회특별위원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○○○(인)

6) 노회 신설

노회의 신설은 매우 신중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. 정치적으로 노회를 신설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노회를 신설 할 때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필히 최소 21당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신설 노회의 지역까지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다.

7) 노회 폐지

분쟁(사고)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정치 제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.

분쟁(사고)노회 수습매뉴얼 9항 참고

폐지가 결정되면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노회로 가입하며,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거부 할 수 없다.

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목사는 본인의 청원으로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여 이명(가입)하도록 한다.